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9,583,268	10,487,498
일반회계	327,390,058	9,821,702
특별회계	22,193,210	665,796
기타특별회계	22,193,210	665,79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37,433	127,123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416,338	12,490
수질개선 특별회계	11,812,030	354,36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212,246	6,367
기반시설 특별회계	8,628	259
치수사업 특별회계	353,852	10,61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07,477	33,224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471,676	14,150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3,524,940	105,748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	48,590	1,45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9,58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